



질병관리청

#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1. 2. 14. (총 28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7430
담당자	최 상 미, 최 은 경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4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4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3,525명(해외유입 6,69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4,7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6,143건(확진자 3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0,892건, 신규 확진자는 총 326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332명으로 총 73,559명(88.0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4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6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22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14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04	147	12	3	19	2	2	3	2	77	5	5	11	5	1	4	6	0
누계	76,827	25,322	2,892	8,341	3,919	1,832	1,088	870	185	19,982	1,707	1,554	2,020	981	707	2,953	1,960	514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4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2	0	6	5	8	3	0	7	15	13	9
누계	6,698	39 (0.6%)	2,994 (44.7%)	1,158 (17.3%)	2,193 (32.8%)	291 (4.3%)	23 (0.3%)	2,870 (42.8%)	3,828 (57.2%)	3,661 (54.7%)	3,037 (45.3%)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파키스탄 1명, 유럽 : 독일 1명, 오스트리아 1명, 이탈리아 1명(1명), 슬로바키아 1명(1명), 덴마크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2명), 멕시코 3명, 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세네갈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13.(토) 0시 기준	73,227	8,458	157	1,514
2.14.(일) 0시 기준	73,559	8,444	156	1,522
변동	(+)332	(-)14	(-)1	(+)8

\* 2월 13일 0시부터 2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14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50.1명), 수도권에서 243명(79.9%) 비수도권에서는 61명(20.1%)이 발생하였다.

(주간 : 2.8일~2.14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14일(0시 기준)	304	243	20	8	7	21	5	-
주간 일 평균	350.1	278.6	14.0	11.3	15.0	24.7	5.1	1.4
주간 총 확진자 수	2,451	1,950	98	79	105	173	36	10

○ 수도권

(주간 : 2.8일~2.14일, 단위 : 명)

구분	2.8.	2.9.	2.10.	2.11.	2.12.	2.13.	2.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07	217	344	383	299	257	243	278.6	1,950
서울	111	86	169	177	155	131	147	139.4	976
인천	17	14	18	25	41	29	19	23.3	163
경기	79	117	157	181	103	97	77	115.9	811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 (구분) 환자 28명(지표포함), 종사자 8명, 보호자 8명, 간병인 12명

-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포함), 이용자 20명(+7), 가족 3명(+3), 기타 1명(+1)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1명\*이다.

\* (구분) 환자 37명, 종사자 11명(+1), 간병인 19명, 가족/보호자 33명(지표포함, +1), 지인 1명(+1)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 (구분) 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1), 교회2 관련 5명, 어린이집 관련 6명, 식당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2명, 기타 18명(+4)

- (인천 서구 의료기관 관련) 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환자 8명(지표포함), 가족 및 보호자 3명

- (인천 서구 가족/지인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지인 관련	19(+4)	지인 7명(지표포함), 가족 12명(+4)
② 노래방 관련	11(+3)	방문자 7명(+2), 종사자 2명, 지인 2명(+1)

-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가족/친척 16명(지표포함)

\* (지역 구분) 경기도 여주 13명, 전남 나주 3명

- (경기 성남시 저축은행 관련) 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직원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87(+5)	교인 및 교인 가족 82명(지표포함, +5), 지인 1명, 기타 4명
② 보습학원 관련	41	학원생 28명, 학원 교사 2명, 기타 11명

- (경기 안산시 제조업/이슬람성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 (구분) 직원 8명(지표포함), 교인 19명(+2)

- (경기 평택 식당/이슬람예배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노출장소 중심으로 집단명 변경

\*\* (구분) 지표환자, 지인 8명(+2), 가족 4명(+3), 기타 3명  
(지역) 경기 평택 1명, 충남 당진 15명

### ○ 충청권

(주간 : 2.8일~2.14일, 단위 : 명)

구분	2.8.	2.9.	2.10.	2.11.	2.12.	2.13.	2.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0	10	5	6	19	28	20	14.0	98
대전	4	2	-	2	1	5	2	2.3	16
세종	1	1	1	-	2	5	2	1.7	12
충북	-	2	2	3	6	4	5	3.1	22
충남	5	5	2	1	10	14	11	6.9	48

- (세종시 건설현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1), 가족 2명, 기타 1명

\*\* (지역) 세종 6명, 대전 1명, 울산 3명, 인천 1명, 경남 1명

### ○ 경북권

(주간 : 2.8일~2.14일, 단위 : 명)

구분	2.8.	2.9.	2.10.	2.11.	2.12.	2.13.	2.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5	13	16	11	15	18	7	15.0	105
대구	20	9	14	10	11	14	3	11.6	81
경북	5	4	2	1	4	4	4	3.4	24

-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일가족 관련	9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3명
② 치과 관련	8	이용자 5명, 종사자 1명, 가족 2명
③ 음식점 관련	15(+1)	방문자 9명(+1), 가족 5명, 기타 1명

- (대구 북구 사무실 관련) 2월 1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사무실 관련	32(+1)	가족 8명(지표포함), 동료 9명, 지인 8명, 기타 7명(+1)
② 북구 음식점 관련	15	종사자 7명, 방문자 4명, 가족 4명

\* (지역) 대구 24명, 경북 21명(+1), 경기 2명

\*\* (추정감염경로) 북구 사무실 직원 → 음식점 방문

## ○ 경남권

(주간 : 2.8일~2.14일, 단위 : 명)

구분	2.8.	2.9.	2.10.	2.11.	2.12.	2.13.	2.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1	17	27	36	29	32	21	24.7	173
부산	7	9	18	29	25	26	12	18.0	126
울산	-	3	-	2	-	2	3	1.4	10
경남	4	5	9	5	4	4	6	5.3	37

- (부산 중구 요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2), 환자 17명

- (부산 해운대구 요양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시설 관련	10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7명, 가족 1명
② 병원 관련	18(+5)	종사자 5명, 환자 7명, 가족 6명(+5)

\* (추정감염경로) 요양시설 입소자 → 병원 입원

- (부산 서구 향운노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5명\*이다.

\* (구분) 종사자 34명(지표포함), 가족 22명(+2), 지인 1명, 기타 8명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13일 이후 총 65건(국내 34건, 해외유입 31건)을 분석한 결과, 59건(국내 34건, 해외유입 25건)은 미검출, 6건(해외유입 6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 (변이 바이러스 확인) 국내 0/34건, 해외유입 6/31건
    - \* (영국 변이) 6건 확인(내국인 6)
      - : △가나 發 4인, △폴란드 發 1인, △UAE 發 1인
    - 지난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94건\*(영국 변이 75건, 남아공 변이 13건, 브라질 변이 6건 / '21.2.14일 0시 기준)이다.
      - \* 총 2,959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2,111건, 해외유입 848건 / '21.2.14일 0시 기준)
  - 확인된 6건의 변이 바이러스 중 5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로 입국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 격리면제자가 출근 시 접촉한 16명(직장동료)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고 자가격리 조치하였다.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 1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1 일일 확진자 현황 (2.14. 0시 기준, 83,5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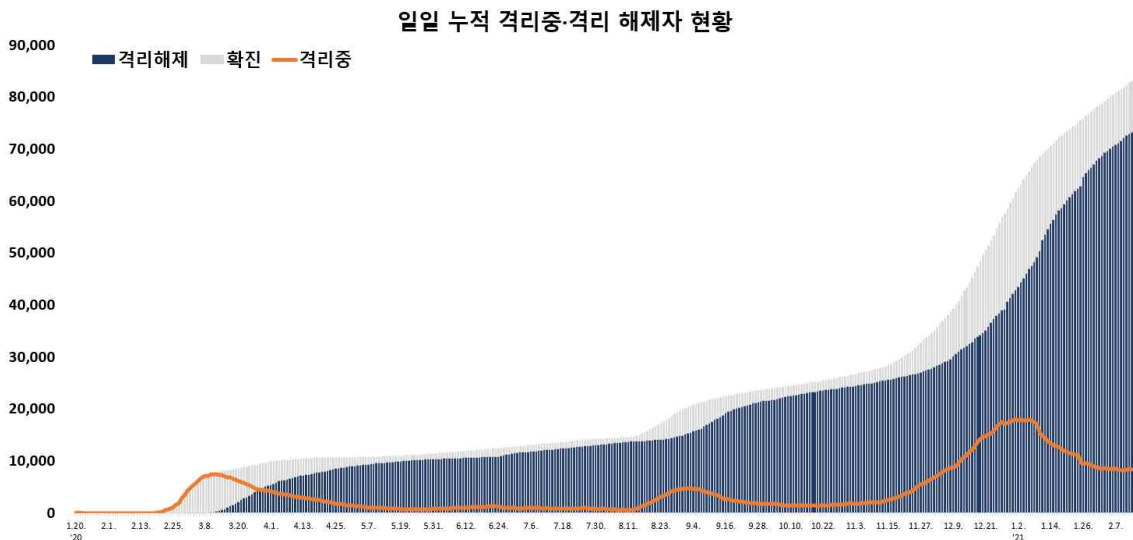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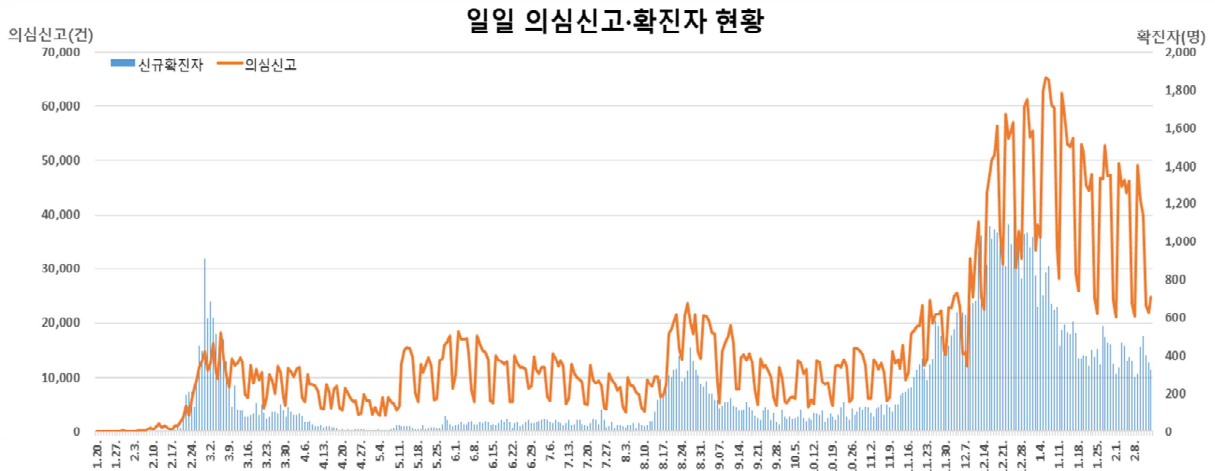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13.(토) 0시 기준	6,115,337	83,199	73,227	8,458	1,514	70,251	5,961,887
2.14.(일) 0시 기준	6,140,086	83,525	73,559	8,444	1,522	78,200	5,978,361
변동	+24,749	+326	+332	-14	+8	+7,949	+16,474

\* 2월 13일 0시부터 2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14. 0시 기준, 83,52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47	5	26,173	(31.34)	268.90
부산	12	3	3,020	(3.62)	88.52
대구	3	0	8,478	(10.15)	347.96
인천	19	0	4,136	(4.95)	139.91
광주	2	0	1,946	(2.33)	133.59
대전	2	0	1,138	(1.36)	77.20
울산	3	0	955	(1.14)	83.26
세종	2	0	210	(0.25)	61.34
경기	77	3	21,412	(25.64)	161.60
강원	5	0	1,772	(2.12)	115.02
충북	5	0	1,642	(1.97)	102.66
충남	11	1	2,172	(2.60)	102.33
전북	5	1	1,084	(1.30)	59.65
전남	1	1	774	(0.93)	41.51
경북	4	1	3,093	(3.70)	116.17
경남	6	0	2,103	(2.52)	62.56
제주	0	0	547	(0.65)	81.55
검역	0	7	2,870	(3.44)	-
총합계	304	22	83,525	(100)	161.10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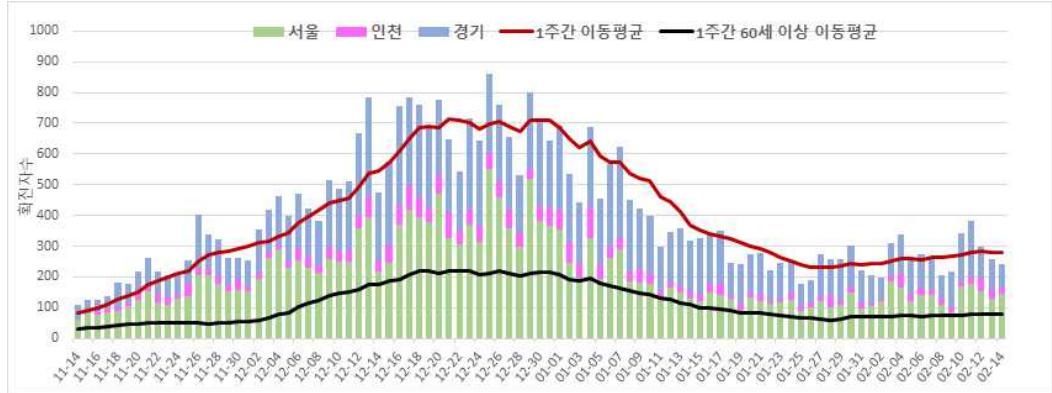
구분	합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8,444	4,003	336	142	354	157	47	14	13	2,063	108	79	160	45	46	107	102	25	643
격리해제	73,559	21,815	2,584	8,125	3,731	1,770	1,076	904	196	18,886	1,628	1,506	1,979	986	721	2,916	1,991	521	2,224
사망	1,522	355	100	211	51	19	15	37	1	463	36	57	33	53	7	70	10	1	3
합계	83,525	26,173	3,020	8,478	4,136	1,946	1,138	955	210	21,412	1,772	1,642	2,172	1,084	774	3,093	2,103	547	2,870

\* 2월 13일 0시부터 2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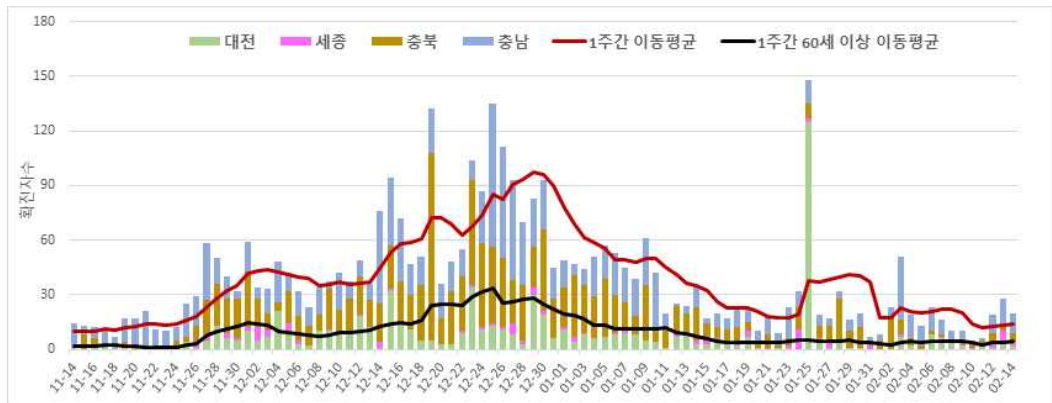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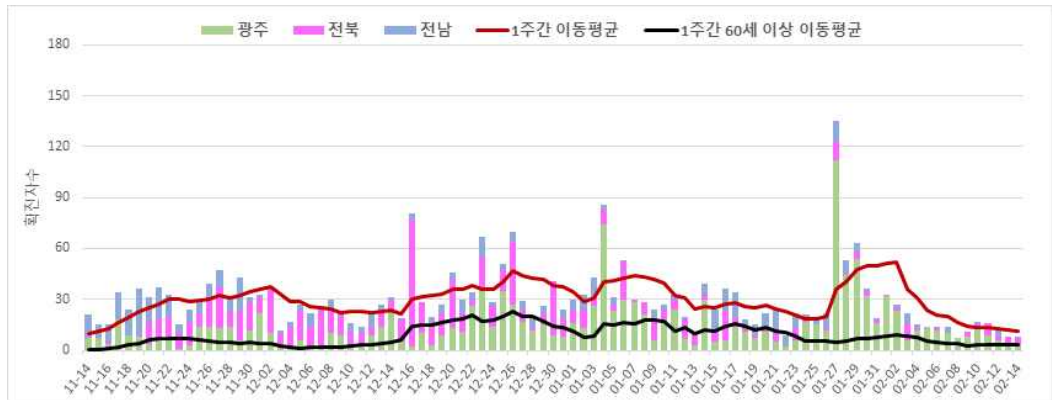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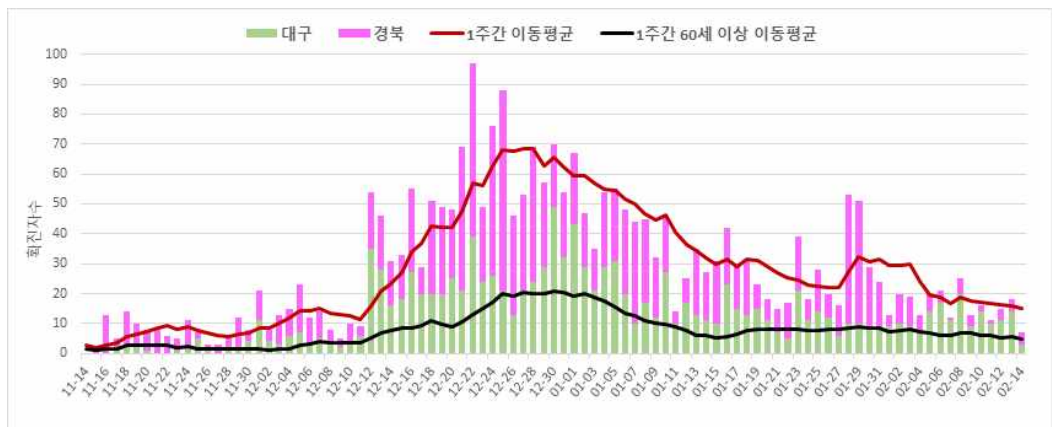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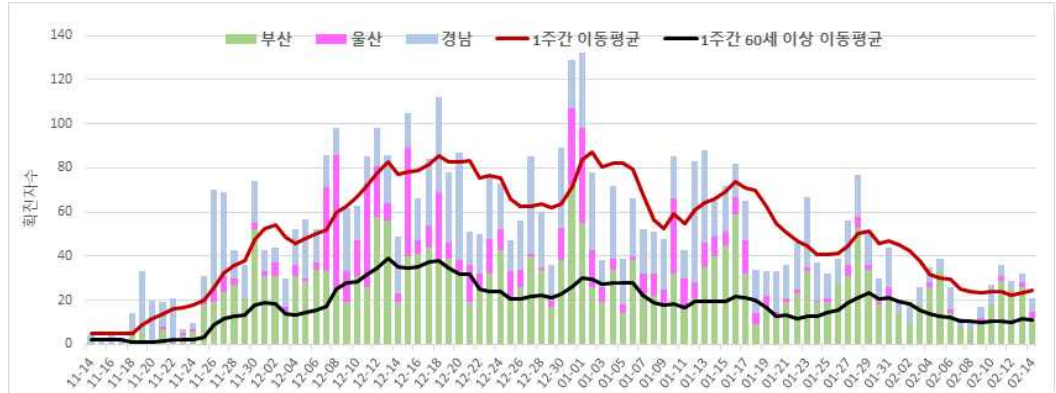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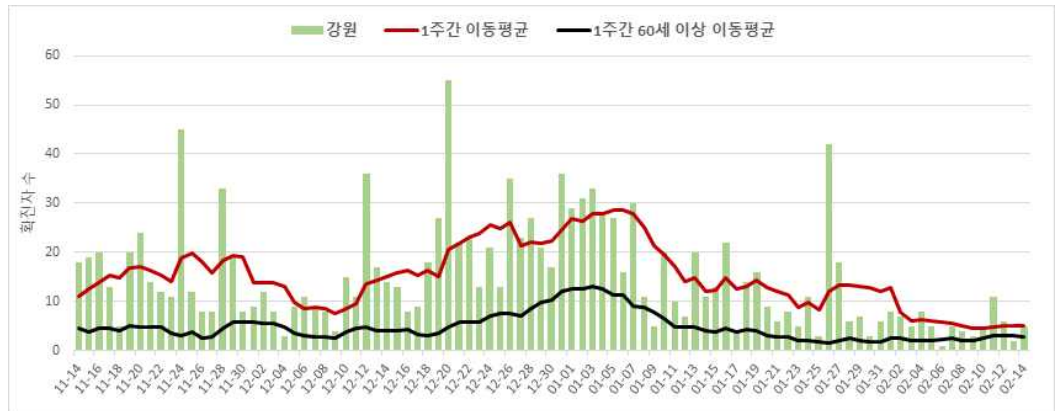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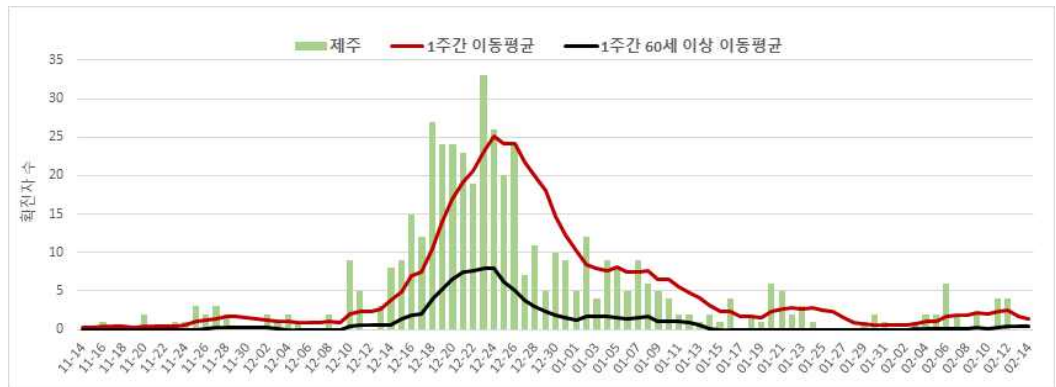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③ **성별 · 연령별 확진자 현황** (2.14. 0시 기준, 83,52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26 (100)	83,525 (100)	161.10
성별	남성	160 (49.08)	41,123 (49.23)	159.00
	여성	166 (50.92)	42,402 (50.77)	163.18
연령	80세 이상	12 (3.68)	4,134 (4.95)	217.67
	70-79	39 (11.96)	6,426 (7.69)	178.15
	60-69	52 (15.95)	13,130 (15.72)	206.96
	50-59	52 (15.95)	15,639 (18.72)	180.44
	40-49	40 (12.27)	11,993 (14.36)	142.96
	30-39	41 (12.58)	10,685 (12.79)	151.67
	20-29	49 (15.03)	12,630 (15.12)	185.56
	10-19	21 (6.44)	5,606 (6.71)	113.47
0-9	20 (6.13)	3,282 (3.93)	79.11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14.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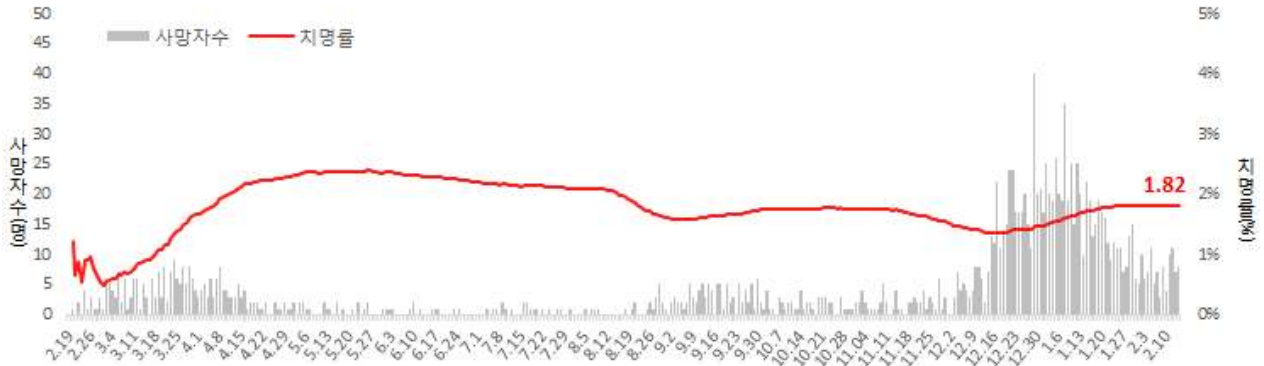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8 (100)	1,522 (100)	1.82
성별	남성	4 (50.00)	756 (49.67)	1.84
	여성	4 (50.00)	766 (50.33)	1.81
연령	80세 이상	4 (50.00)	865 (56.83)	20.92
	70-79	3 (37.50)	414 (27.20)	6.44
	60-69	1 (12.50)	175 (11.50)	1.33
	50-59	0 (0.00)	49 (3.22)	0.31
	40-49	0 (0.00)	12 (0.79)	0.10
	30-39	0 (0.00)	6 (0.39)	0.06
	20-29	0 (0.00)	1 (0.07)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계	225	224	220	211	200	197	190	188	189	184	170	161	157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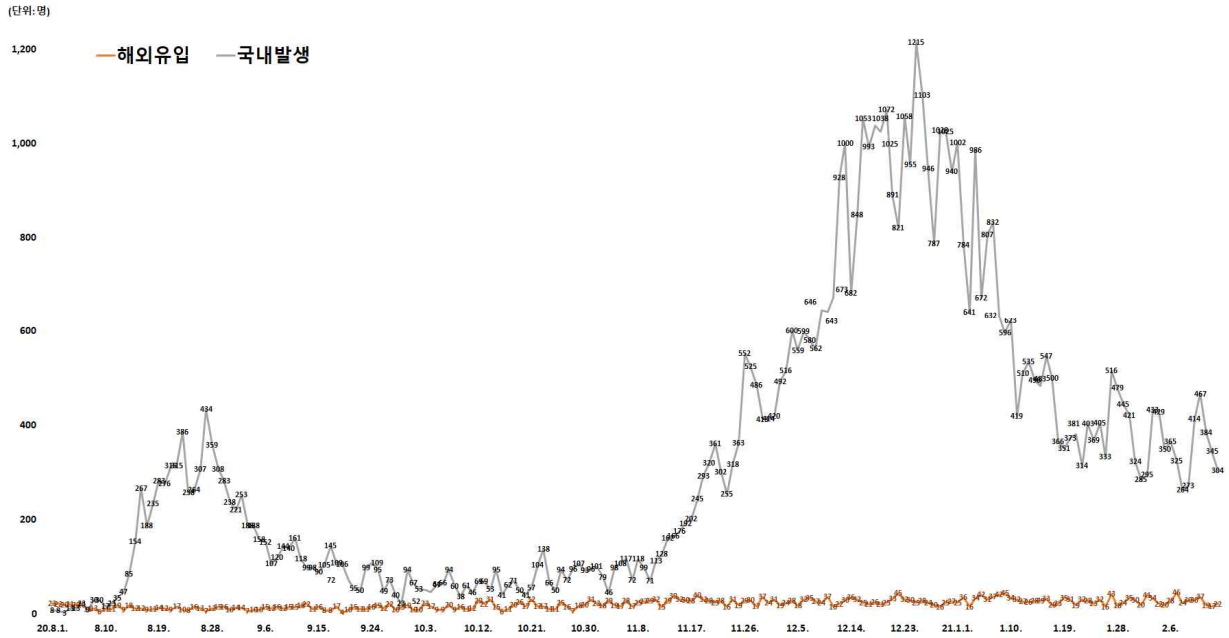
구분	위중증	( % )
계	156	100.0
80세 이상	30	19.2
70-79세	59	37.8
60-69세	52	33.3
50-59세	11	7.1
40-49세	2	1.3
30-39세	2	1.3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감염경로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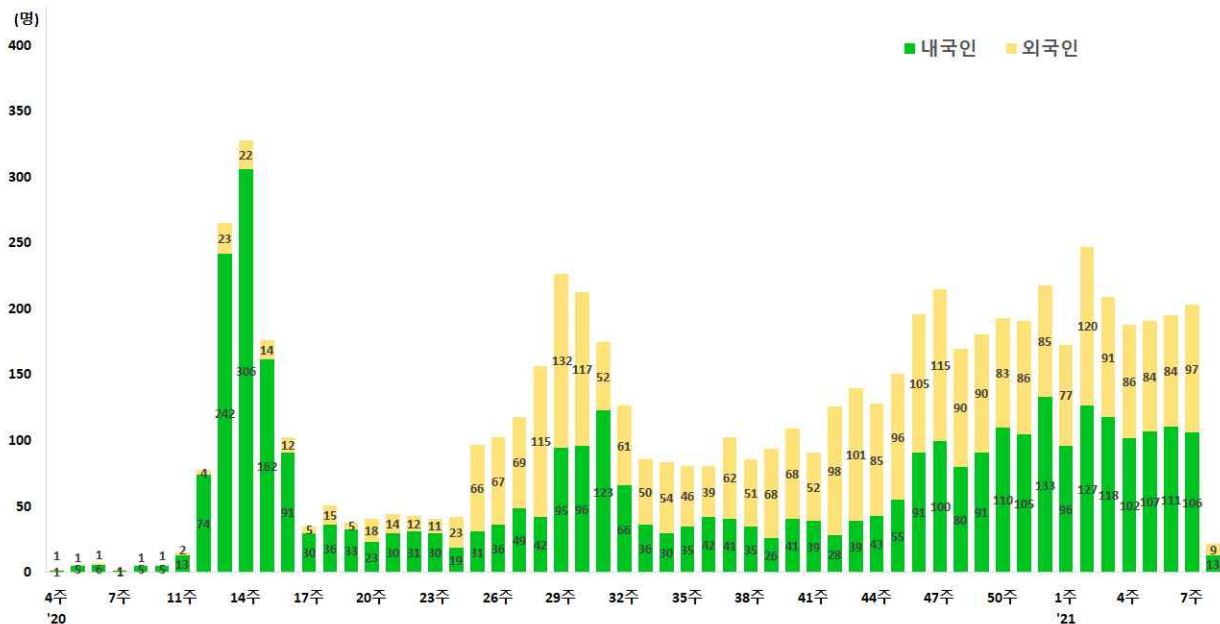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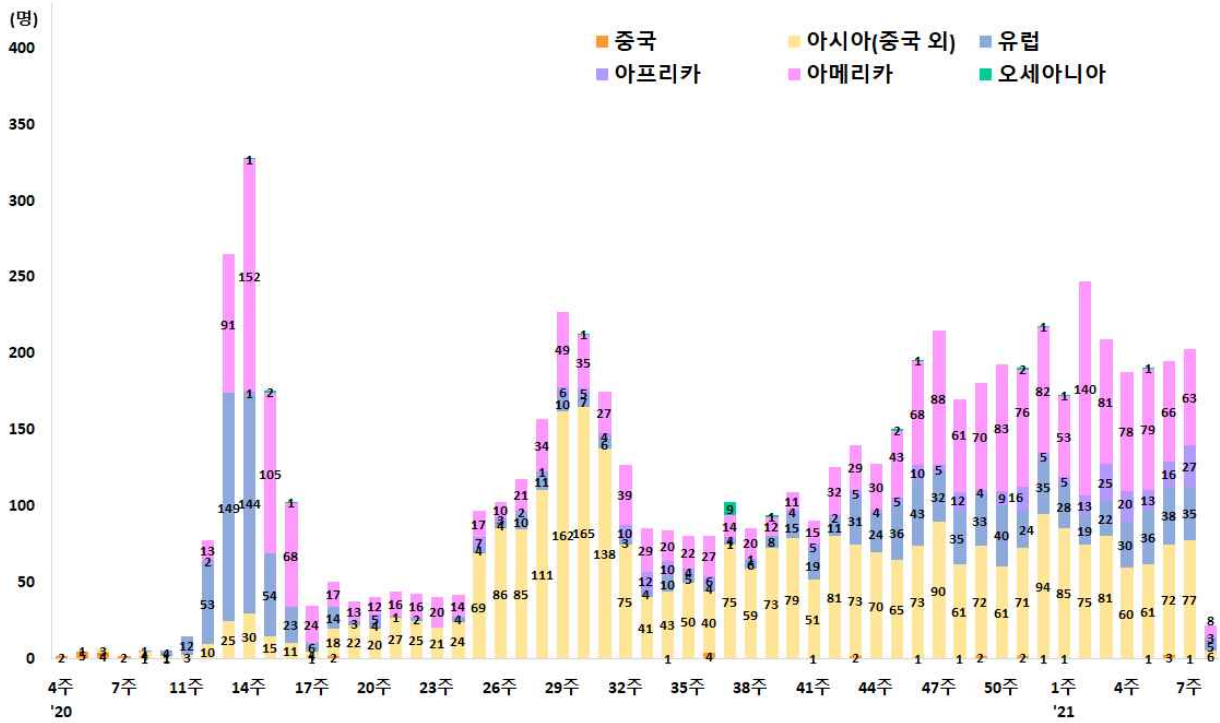


### < 최근 2주간 ('21.2.1일 0시~'21.2.14일 0시까지 신고된 5,32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6,173	851	9,780	8	9,683	89	8,552	6,990	152	<p>&lt;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li> <li>•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li> <li>•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li> <li>•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li> <li>•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li> <li>•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li> <li>•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li> <li>•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li> <li>•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li> <li>•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li> <li>•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li> <li>•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li> <li>•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li> <li>• 충북 고남읍성당잔잔인생서빙원 관련(42명)</li> <li>•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li> <li>•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li> <li>•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li> </ul> <p>&lt;최근 발생 주요 사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li> <li>•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4명)</li> <li>•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01명)</li> <li>•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56명)</li> <li>•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28명)</li> <li>•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li> <li>•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2명)</li> <li>•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li> <li>•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li> <li>• 부산 서구 향운노조 관련(65명)</li> </ul>
부산	3,020	128	1,874	12	1,806	56	612	406	15	
대구	8,478	137	6,242	4,512	1,723	7	1,159	940	3	
인천	4,136	217	1,944	2	1,932	10	1,283	692	19	
광주	1,946	114	1,540	9	1,525	6	160	132	2	
대전	1,138	50	610	2	607	1	302	176	2	
울산	955	85	677	16	657	4	116	77	3	
세종	210	25	96	1	94	1	48	41	2	
경기	21,412	1,430	8,311	29	8,204	78	7,182	4,489	80	
강원	1,772	65	1,000	17	982	1	464	243	5	
충북	1,642	88	869	6	856	7	433	252	5	
충남	2,172	152	1,077	0	1,076	1	564	379	12	
전북	1,084	103	741	1	739	1	134	106	6	
전남	774	67	536	1	525	10	96	75	2	
경북	3,093	140	2,163	565	1,597	1	473	317	5	
경남	2,103	143	1,309	33	1,244	32	368	283	6	
제주	547	33	347	0	346	1	93	74	0	
검역	2,870	2,870	0	0	0	0	0	0	7	
합계	83,525 (%)	6,698 (8.0)	39,116 (46.8)	5,214 (6.2)	33,596 (40.2)	306 (0.4)	22,039 (26.4)	15,672 (18.8)	32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4.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신규	0	26,143	26,090	0	53	0	30
서울	0	11,423	11,380	0	43	0	19
경기	0	12,366	12,358	0	8	0	11
인천	0	2,354	2,352	0	2	0	0
누계	124	1,802,303	1,780,811	4,235	17,209	48 <sup>3)</sup>	5,053
서울	46	840,398	832,511	1,485	6,382	20	2,657
경기	70	818,471	805,142	2,719	10,583	27	2,044
인천	8	143,434	143,158	31	244	1	352

-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8.~2.14.)

구분	2.8.	2.9.	2.10.	2.11.	2.12.	2.13.	2.14.	주간누계	총 누계
계	34,963	82,942	77,291	81,260	41,983	36,663	50,892	405,994	7,942,38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21,221	49,209	42,618	39,985	23,361	21,968	24,749	223,111	6,140,086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13,742	33,733	34,673	41,275	18,622	14,695	26,143	182,883	1,802,303
신규 확진자 수(명)	288	303	444	504	403	362	326	2,630	83,525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sup>3)</sup>	47	31	98	87	81	58	30	432	5,053

-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7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7,122,583	471,635	101,693	3,584	1.74	8,194.13
인도	10,892,746	155,550	12,143	103	1.43	789.33
브라질	9,713,909	236,201	54,742	1,351	2.43	4,569.10
러시아	4,057,698	79,696	14,861	502	1.96	2,781.15
영국	4,013,803	116,287	15,144	758	2.90	5,911.34
프랑스	3,369,672	81,033	20,279	644	2.40	5,160.29
스페인†	3,041,454	64,217	-	-	2.11	6,498.83
이탈리아	2,697,296	93,045	13,893	316	3.45	4,458.34
터키	2,572,190	27,284	7,763	97	1.06	3,051.23
독일	2,328,447	64,742	8,354	551	2.78	2,778.58
콜롬비아	2,179,641	56,983	6,294	250	2.61	4,282.20
아르헨티나	2,008,345	49,874	7,311	200	2.48	4,443.24
멕시코	1,968,566	171,234	10,677	1,474	8.70	1,527.20
폴란드	1,583,621	40,709	6,585	285	2.57	4,189.47
이란	1,503,753	58,809	7,298	58	3.91	1,790.18
남아프리카공화국	1,487,681	47,670	2,781	288	3.20	2,508.74
우크라이나	1,268,049	24,285	5,182	111	1.92	2,901.71
페루	1,212,309	43,045	8,807	186	3.55	3,673.66
인도네시아	1,201,859	32,656	9,869	275	2.72	439.44
체코	1,082,849	18,058	8,883	156	1.67	10,120.08
네덜란드	1,021,643	14,727	4,385	66	1.44	5,974.52
캐나다	817,163	21,088	3,181	84	2.58	2,167.54
포르투갈	781,223	15,034	2,854	149	1.92	7,659.05
칠레	768,471	19,345	4,164	83	2.52	4,023.41
루마니아	757,676	19,277	2,550	77	2.54	3,946.23
방글라데시	539,975	8,253	404	5	1.53	327.85
필리핀	545,300	11,495	2,018	26	2.11	497.54
일본	413,154	6,849	1,403	75	1.66	326.60
헝가리	385,755	13,636	2,020	93	3.53	3,976.86
네팔	272,557	2,054	127	2	0.75	936.62
미얀마	141,543	3,188	21	4	2.25	260.19
중국	89,763	4,636	7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441	1,441	43	2	1.69	5.94
우즈베키스탄	79,381	622	41	0	0.78	62.75
태국	24,405	80	126	0	0.33	34.96
베트남	2,142	35	2	0	1.63	2.20
대한민국	83,525	1,522	326	8	1.82	161.14

\* 국가별 총 인구수 :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p>▶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p> <p>*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p>
기타 모임·행사	<p>▶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p> <p>*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p> <p>▶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p> <p>▶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p> <p>▶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p>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노래연습장	<p>▶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p>▶ <b>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b></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p> <p>▶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p> <p>▶ <b>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파티룸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①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b>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b></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li> <li>▶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li> <li>▶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li> <li>▶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li> <li>▶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li> </ul>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li> </ul>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li> <li>▶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li> </ul>
스포츠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내 입장</li> </ul>
등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집도 1/3 준수</li> </ul>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b></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li>-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li> <li>▶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li> </ul>

##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p>▶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p> <p>*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p>
기타 모임·행사	<p>▶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p> <p>▶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p> <p>▶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p> <p>▶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p>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노래연습장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음식섭취 금지</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b></li> </ul>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ul>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b>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b></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li> <li>▶ <b>마스크 착용</b></li> </ul>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②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li> <li>▶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li> <li>▶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li> <li>▶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li> <li>▶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b>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li> <li>▶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ul>

## 붙임 5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 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붙임 6

설 연휴 방역수칙 포스터

2021.02.05



—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마음으로 함께하기



외출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더 자세한  
설연휴 방역수칙  
확인하기

설 연휴에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주세요!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하세요**



##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중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중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등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